(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12/2567호

투자위원회 고시 제15/2565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체 에너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개정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제15/2565호 스마트 산업과 지속가능한 산업 강화 방안』에 이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체 에너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보다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2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7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개정을 취소하고 다음의 내용을 고시한다.

1.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체 에너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1 다음의 5가지를 포함하여 효율 향상에 필수적인 주요 기계 및/또는 장비에 대한 투자

      1.1.1 태양광 패널(PV 모듈)

      1.1.2 파워 인버터

      1.1.3 전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s)

      1.1.4 전력 배전 시스템,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및 검사 시스템, 보안 시스템, 기상 관측소(weather stations), 태양광 패널 클리닝 시스템

      1.1.5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및 BESS 인버터

   1.2 1.1에 명시된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주요 기계 및/또는 장비의 설치 비용과 설치 구조물(mounting structure) 비용

2. 법인소득세 면제에 따른 지원의 최대 한도는 다음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한다.

   2.1 1.1.1~1.1.4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투자와 1.2에 명시된 설치비, 설치 구조물 비용을 합하여 1메가와트(MW) 생산 당 3천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2.2 1.1.1~1.1.5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투자와 1.2에 명시된 설치비, 설치 구조물 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은 1메가와트(MW) 생산 당 4천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제출되는 투자촉진 신청서에 적용된다.

4. 2024년 11월 1일 전에 제출된 촉진 신청서의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15/2565호에 명시된 조건과 기준을 따른다.

고시일 2024년 9월 3일

Pichai Chunhavajira

(Mr. Pichai Chunhavajira)

부총리

투자위원회 의장